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및 시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및 검사
4. 각종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의 제공, 시험, 단독기기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의 시행
5. 각종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6. 현장 정리
7. 본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 등에 대해 필요한 업무협조
8.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한다.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동의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1. 착공계 1부 (발주자 소정양식)
2. 현장대리인계 1부(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예정공정표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안전관리자 선임계,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5. 공정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7.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② 각종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③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①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제9조(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0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정한 부분,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 1부를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3. 특수공법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절차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촬영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사항, 반입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쓰레기 처리장, 굴토지역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고재, 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대기환경보전법」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안전관리자(필요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필요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준공 시 제출도서)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1부.
2. 준공내역서 1부.
3. 임금체불확인서 1부.
4.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
5. 준공사진첩 1부.
6. 기타 증빙서류

② 제①항의 모든 제출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17조(하자보증)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교체·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2%)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이에 불응

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산권 보증위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

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발주자의 보안규정(이하 “보안규정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관계자에게 제1항의 보안규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 출입자는 플랜트 제어·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 1부
2. 보호구역 출입 신청 승인서 1부

제2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①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사용 및 그 배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공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③ 보험료는「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정산한다.

제29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선금,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